

#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

## 1. 시험일시

가. 시험일: 2021. 11. 18. (목)

## 2. 응시원서 작성, 접수 및 변경

가. 작성, 접수 및 변경 기간: **2021. 8. 19.(목) ~ 9. 3.(금)** 09:00~17:00<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>

※ 응시원서 작성,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.

### 나. 작성, 접수 및 변경 장소

구 분	작성, 접수 및 변경 장소
졸업예정자	재학 중인 고등학교
졸업자	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·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*
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	현재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의 시·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*

\* 시·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.

- ※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.
- ※ 졸업자 중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②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(도의 시·군만 해당)일 경우, 현재 주소지 관할 시·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.

## 3.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

### 가. 공통서류

- 응시원서(원서접수처에 비치)
- 신분증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여권] 지참
- 여권용 규격사진 2매 [최근6개월이내 (2021.02.20.이후 촬영)]
  - ※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(가로3.5cm×세로4.5cm), 머리의길이(정수리부터턱까지)3.2cm~3.6cm 이어야함
- 응시수수료

선택 영역 수	3개 영역 이하	4개 영역	5개 영역
응시 수수료	37,000원	42,000원	47,000원

### 나. 개별서류(해당자에 한함)

대리접수자 ( 장애인, 군인, 수감자, 입원 중인 환자, 해외거주자 )	- 대리접수서약서 1부 -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.(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) - 장애인(복지카드), 군인(군복무증명서), 입원 중인 환자(입원확인서),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(출입국 사실증명서), 수형자(수감확인서),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(격리통지서) 해당서류 1부. ※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대리서약서 다운 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
--	---

#### 4. 응시수수료 면제

구분	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계층 확인서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1.7.20. 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

#### 5. 수능 성적표 배부

가. 일시: 2021. 12. 10.(금) 10:00~17:00

나. 배부장소: 원서를 접수한 곳

#### 6. 응시수수료 환불

가. 대상자 :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

나. 신청 기간 : 2021. 11. 22.(월) ~ 11. 26(금), 09:00~17:00

다. 신청 장소 :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

라. 환불 신청 제출서류

1) 환불 신청서 1부(접수처에 비치)

2) 증빙서류 : 진단서, 수시모집 최종 합격통지서, 군복무확인서, 사망확인서 등

※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

※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)

- 환불 기준 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

3) 환불시기 및 방법 : 2021.12.31.(목)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

※ 신청계좌 :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

선택 영역 수	3개 영역 이하	4개 영역	5개 영역
환불액(원)	22,200원	25,200원	28,200원

## 사진크기

- 가로 3.5cm, 세로 4.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 ~ 3.6cm 이어야 합니다.
-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.



### ◦ 품질·배경

-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.
-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,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
-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


저품질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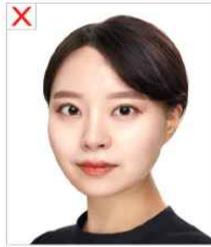
부적절한 조명



(인물 및 배경) 그림자

### ◦ 얼굴방향·표정

-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.(측면포즈 불가)
- 입은 다물어차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(무표정)이어야 합니다.
-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


측면포즈



웃음



얼굴 가림

### ◦ 눈동자·안경

-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.
-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유색의 미용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.



눈동자 가림



적목 현상



유색의 미용렌즈

### ◦ 의상·장신구

-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,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.
-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, 얼굴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-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.
- 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.
-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.



모자 착용



장신구 빛 반사



종교 의상

### ◦ 영아(24개월 이하)

-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.
-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,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.



정면 미응시



입 벌림



사물 노출